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050

발의연월일: 2021. 12. 22.

발 의 자:김성원·김용판·김정재

조명희 · 정희용 · 박덕흠

이양수 · 이주화 · 김태호

이 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하여 확성장치와 휴대용확성장치, 녹음기 또는 녹화기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소음기준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 소음피해 민원이접수되어도 단속할 법적근거가 없어 이에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또한, 최근 헌법재판소는 확성장치 등의 사용시간과 사용지역에 따른 소음 규제기준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면서 2020. 12. 31.을 시한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바 있음(2019. 12. 27. 2018헌마730).

따라서, 국민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선거운동에 필요한 범위에서 합리적인 소음 규제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와 휴대용 확성 장치, 녹음기 또는 녹화기를 사용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으로 정하는 장소별 및 시간대별 등에 대한 소음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1조제5항, 제256조제5항제9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79조 및 제216조제1항에 따른 확성장치·휴대용 확성장치·녹음기 또는 녹화기(이하 "확성장치등"이라 한다)를 사용하는 때에는 소음기준에 적합한 확성장치등을 시간대별 및 장소별 허용기준에 부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단에 따른 소음기준과 시간대별 및 장소별 허용 기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56조제5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제91조제5항을 위반하여 확성장치와 휴대용 확성장치, 녹음기 또는 녹화기를 사용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91條(擴聲裝置와 自動車 등의	第91條(擴聲裝置와 自動車 등의
사용제한) ① ~ ④ (생 략)	사용제한) ① ~ ④ (현행과 같
	승)
<u><신 설></u>	⑤ 제79조 및 제216조제1항에
	<u>따른 확성장치·휴대용 확성장</u>
	<u>치·녹음기 또는 녹화기(이하</u>
	"확성장치등"이라 한다)를 사용
	하는 때에는 소음기준에 적합
	한 확성장치등을 시간대별 및
	장소별 허용기준에 부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단
	에 따른 소음기준과 시간대별
	및 장소별 허용 기준은 중앙선
	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⑤
해당하는 者는 1年 이하의 徵	
役 또는 200萬원 이하의 罰金	
에 處한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u><신 설></u>	9의2. 제91조제5항을 위반하여
	확성장치와 휴대용 확성장치,

	녹음기 또는 녹화기를 사용한
	<u>자</u>
10. ~ 12. (생 략)	10. ~ 12. (현행과 같음)